

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,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~~제7호~~제8호, 제2항,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, 제13호, 제2항,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2항,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, 제8호, 제2항,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~~제2항~~ 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◆ 약어표 ◆

- 마약류관리법 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- 특정범죄가중법 :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1. 투약·단순소지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환각물질	- 8월	6월 - 1년	8월 - 1년6월
2	대마, 향정 라.목 및 마.목 등	6월 - 10월	8월 - 1년6월	10월 - 2년
3	향정 나.목 및 다.목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 - 3년
4	마약, 향정 가.목 등	10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4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	○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중요한 수사협조	○ 상습범인 경우 ○ 동종 전과(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○ 소극 가담	○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	행위자 /기타	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마약중독자의 자발적·적극적 치료의사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○ 일반적 수사협조	○ 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중 누범

2. 매매·알선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환각물질, 향정 라.목 등	- 8월	6월 - 1년4월	10월 - 2년
2	대마, 향정 나.목 및 다.목 등	8월 - 1년6월	1년 - 2년	1년6월 - 4년
3	마약, 향정 가.목 등	2년6월 - 5년	4년 - 7년	5년 - 8년
4	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	5년 - 9년	7년 - 11년	9년 - 14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○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○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중요한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습범인 경우(1, 2유형) ○ 동종 전과(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○ 일반적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중 누범

3. 수출입 · 제조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향정 라.목 등	8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3년
2	대마, 향정 다.목	1년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3	마약, 향정 가.목 및 나.목 등	2년6월 - 5년	4년 - 7년	5년 - 8년
4	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	5년 - 9년	7년 - 11년	9년 - 14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○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○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중요한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습범인 경우(1, 2유형) ○ 동종 전과(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○ 일반적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중 누범

4. 대량범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제1유형	2년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2	제2유형	3년 3년6월 - 6년	5년 - 8년 9년	7년 - 10년 11년
3	제3유형	6년 - 9년	8년 - 11년	10년 - 14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○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○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중요한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전과(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○ 일반적 수사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중 누범

[유형의 정의]

1. 투약·단순소지 등

가. 제1유형(환각물질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환각물질 ○ 섭취·흡입/같은 목적 소지	○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	○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
나. 제2유형(대마, 향정 라.목 및 마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향정 라.목 ○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조제·투약·처방전 발급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향정 마.목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대마 등 ○ 대마, 임사대마 재배·소지·소유·운반·보관·사용 ○ 대마·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·섭취/같은 목적 대마·대마초 종자·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○ 대마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	호	
■ 마약 원료식물, 마약 성분 함유 원료·종자·종묘 ○ 원료식물 재배, 원료·종자·종묘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향정 가.목 원료식물 ○ 원료식물 흡연·섭취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2군 임시마약 ○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	○ 1/2 가중

다. 제3유형(향정 나.목 및 다.목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향정 나.목 ○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조제·투약·처방전 발급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향정 다.목 ○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조제·투약·처방전 발급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	○ 1/2 가중 ○ 1/2 가중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	제61조 제2항	

라. 제4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<p>■ 마약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, 임시마약 소지·소유·관리·수수 ○ 마약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이상 징역 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<p>■ 헤로인, 염류, 함유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지·소유·관리·수수·운반·사용·투약·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이상 징역
<p>■ 향정 가.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이상 징역 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<p>■ 1군 임시마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 ○ 사용/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이상 징역 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<p>■ 상습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년 이상 징역 ○ 1/2 가중

2. 매매·알선 등

가. 제1유형(환각물질, 향정 라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환각물질 ○ 판매·제공	○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	○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향정 라.목 ○ 매매·알선·수수·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대마 등 ○ 대마, 임시대마 수수 ○ 대마초종자·대마초종자 껍질 매매·알선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2군 임시마약 ○ 매매·알선·수수·제공/ 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	○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	○ 1/2 가중

나. 제2유형(대마, 향정 나.목 및 다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향정 나.목 ○ 매매·알선·수수·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■ 향정 다.목 ○ 매매·알선·수수·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대마 ○ 매매·알선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1항 제7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마약 성분 함유 원료·종자·종묘 ○ 관리·수수·성분 추출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1항 제2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마약, 향정 원료물질 ○ 제조 목적 매매·알선·수수/같은 목적 소지·소유·사용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1항 제4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향정 가.목 원료식물 ○ 매매·알선·수수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1항 제6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○ 수수·제공·흡연·섭취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1항 제8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 59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 60조 제2항	○ 3년 이상 징역 ○ 1/2 가중

다. 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마약, 임시마약 ○ 매매·알선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	○ 마약류관리법 제 58조 제1항 제1호	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■ 향정 가.목 ○ 매매·알선·수수/같은 목적	○ 마약류관리법 제	○ 무기 또는 5년 이상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	58조 제1항 제3호	징역
■ 1군 임시마약 ○ 매매·알선·수수·제공/ 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	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, 임시마약·향정, 임시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○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	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	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라. 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마약, 향정 가.목, 1군 임시마약 ○ 영리 목적 매매·알선·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 ○ 상습 매매·알선·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	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■ 기타 향정 ○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 ○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	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	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
3. 수출입·제조 등

가. 제1유형(향정 라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---------	---------	-----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마약 원료식물 ○ 수출입·매매·제조 목적 재배/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·종자·종묘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대마초 ○ 대마, 임시대마 의 수출·매매·제조 목적 대마초, 임시대마초 재배	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향정 다.목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■ 2군 임시마약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	○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	○ 3년 이상 징역 ○ 1/2 가중

나. 제2유형(대마, 향정 다.목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■ 대마 ○ 수출입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○ 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	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○ 1년 이상의 유기징역
■ 향정 다.목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	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	○ 1년 이상 징역
■ 상습범	○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	○ 3년 이상 징역

다. 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및 나.목 등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<p>■ 마약, 임시마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p>■ 향정 가.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○ 원료식물 성분 추출/수출입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p>■ 향정 나.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p>■ 마약, 향정 원료물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,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·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p>■ 1군 임시마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입·제조/같은 목적 소지·소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라. 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<p>■ 마약, 향정 가.목, 나.목, 대마,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, 1군 임시마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리 목적 수출입·제조 등 ○ 상습 수출입·제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○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
4. 대량범

가. 제1유형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 정 형
<p>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5,000만 원 미만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</p>	<p>○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</p>	<p>○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</p>

나. 제2유형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 정 형
<p>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 5,000만 원 이상</p> <p>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</p>	<p>○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호</p> <p>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</p>	<p>○ 무기 또는 3년 7년 3년 7년 이상 징역</p> <p>○ 무기 또는 5년 7년 5년 7년 이상 징역</p>

다. 제3유형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 정 형
<p>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 원 이상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)</p>	<p>○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</p>	<p>○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</p>

구 성 요 건	적 용 법 조	법정형
<p>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원 이상</p>	<p>○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</p>	<p>○ 무기 또는 5년 10년 이상 징역</p>

[양형인자의 정의]

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-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
 - 타인에 대한 보복,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중요한 수사협조

-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.
 -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,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,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·마약류의 양·횡수·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
 - 매매·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, 수출입·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

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

- 다만, 피고인이 '수사협조'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라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마. 마약중독자의 자발적·적극적 치료의사

-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,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,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·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바. 일반적 수사협조

- '중요한 수사협조'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.
- 다만, 피고인이 '수사협조'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사. 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

-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·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

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.

아.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자. 상습범인 경우(제1, 2유형)

- 매매·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·제조 등 유형의 제1,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수출입·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(대마, 향정 다.목)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·소유행위(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)의 상습범(같은 조 제2항)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1.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.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1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.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.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1.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.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.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○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○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○ 상습범인 경우 ○ 대량범인 경우 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중요한 수사협조 ○ 자수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○ 진지한 반성 없음 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○ 진지한 반성 ○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○ 피고인이 고령 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○ 일반적 수사협조 ○ 마약중독자의 자발적·적극적 치료의사(투약·단순소지 유형)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